

# IIEPA 관세환급 기업안내 자료

□ (배경) IIEPA 관세 소송 연방대법원 판결이 '25.12월 또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가운데, 관세환급 가능성·절차 기업 안내 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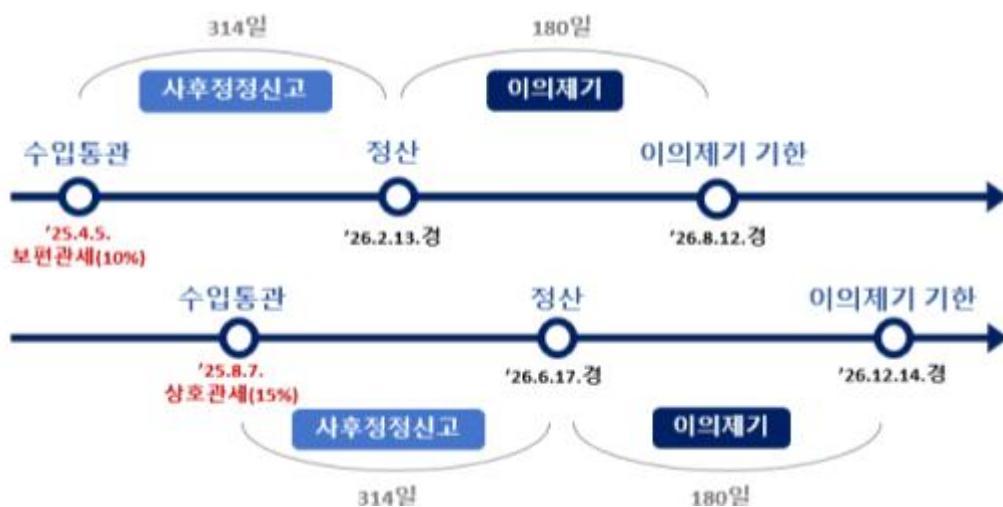
- 최근 美 코스트코, 日기업 美 계열사 9개 등이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법원 판결 전 선제적 대응 움직임 관찰

□ 안내사항

- (판결전망) 現 연방대법원 구성(공화 6 v. 민주 3) 고려시, 행정부 승소 가능성도 배제 불가
- (환급범위) 위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환급 범위를 원고로 제한할 가능성 존재 / 단, 他기업도 판결에 근거 환급청구 可
- (환급절차) 관세 환급방식은 불확실하나, 일반적 행정절차 기반으로 진행 예상 / 환급절차는 정산(liquidation) 전후에 따라 상이

\* 정산(liquidation)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·납부한 관세액을 美 관세청(CBP)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수입통관일로부터 대략 314일 소요

## < 한국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환급 절차 >



\* 중국 펜타닐관세('25.2.4. 발효, '25.12.15.경 정산), 캐나다·멕시코 펜타닐관세('25.3.4. 발효, '26.1.12.경 정산), 韓 보편관세('25.4.5. 발효, '26.2.13.경 정산)와 상호관세('25.8.7. 발효, '26.6.17.경 정산)가 서로 다른 시점에 발효된바, 각 관세별로 예상 정산일 및 이의제기 기한이 상이함.

## ①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

### (정산前)

- 보편관세(10%): 수입통관('25.4.5.) - 정산예정일('26.2.13.경)
- 상호관세(15%): 수입통관('25.8.7.) - 정산예정일('26.6.17.경)
- 정산일이 임박한 경우 정산유예 신청(extension request) 후 CBP에서 유예 거부시 국제무역법원(CIT)에 별도 관세환급소송 및 예비적 금지명령(preliminary injunction) 신청 검토

### (정산後)

- 보편관세(10%): 정산예정일('26.2.13.) - 이의제기 기한('26.8.12.경)
  - 상호관세(15%): 정산예정일('26.6.17.) - 이의제기 기한('26.12.14.경)
  -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(CBP)에 이의제기(protest) 필요하며,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(불확실성 높음)
    - \* 정산유예 요청이 거절당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
  - 특히, 정산 후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, 이의제기 검토 필요
    - 이의제기 기각시, 국제무역법원(CIT)에 소송(180일내) 제기 및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검토 필요
    - 다만, CBP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최장 2년이 소요되는 바, 가속 처분 제도\* 활용을 통해 사전에 불확실성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
- \* 가속처분(Accelerated Disposition): 이의제기 30일 후 CBP 무응답시 기각으로 간주

## ②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

(정산前)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건별 사후정정(post summary correction, PSC)만 제출하면 환급 가능 (불확실성 낮음)

### (정산後) 판결 선고 前과 동일

## □ 기업 권고사항

(1) 관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/ 관세의무자에 미해당시 우리기업-美 수입업자간 관세 부담·환급 계약 확인 필요

\* 관세의무자 : ①화주(owner), ②선하증권 수탁자(consignee), ③구매자(purchaser)

○ 관세의무자 해당시(※ 통상 예외적 상황), 직접 관세환급 청구 가능

○ 관세의무자 미해당시(※ 통상 일반적 상황), 직접 관세환급 청구 불가

- 계약 존재시,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에 관세환급 요청 및 청구

- 계약 부재시, 계약 제반 사항<sup>\*</sup>을 고려하여 수입업자와 협상 안내

\* [例] 관세부담 주체(수출업자 부담 / 수출업자-수입업자 공동 부담 / 수입업자 부담)

○ 통상 수입업자인 美 기업만 CBP 등에 관세환급 청구 가능하나,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DDP(최근 기계 업종 활용 多) 활용시, CBP에 직접 환급 신청 가능

\* DDP(Delivered Duty Paid):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

\*\* NRI(Non-Resident Importer)로 등록한 경우 직접 신청 가능

○ 다만, DDP 조건으로 합의하면서도 소유권은 Buyer가 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CBP에 직접 환급 신청 불가 → 환급 신청을 한 수입업자와 추가 협의 필요

(2) IEEPA 관세 중 중국 펜타닐관세 정산은 '25.12.15.경부터, 캐나다·멕시코 펜타닐관세 정산은 '26.1.12.경부터 본격화 예정

○ 韓 '25.4.5.부터 부과된 보편관세(10%)는 '26.2.13.경, '25.8.7.부터 부과된 상호관세(15%)는 '26.6.17.경 정산 본격화 예상

(3) 판결 선고 여부 및 정산 일정·여부에 따라 아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대응

### < 시나리오별 대응권고 >

판결 여부	정산 여부	대응전략	관세정산 시점	
			보편관세	상호관세
판결 前	정산 前	· 정산일 임박시 CBP에 정산유예 신청 ⇒ 유예 거부시 법원(CIT)에 관세환급소송 검토	'26.2.13경~ (25.4.5. 발효)	'26.6.17경~ (25.8.7. 발효)
	정산 後	· 정산후 180일내 CBP에 이의제기 신청 검토 ⇒ 이의제기 기각시 법원(CIT)에 제소 검토		
판결 後	정산 前	· 건별 사후신청(PSC) 제출 후 환급		
	정산 後	· 정산후 180일내 CBP에 이의제기 신청 검토 ⇒ 이의제기 기각시 법원(CIT)에 제소 검토		

- [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, 정산 前] 정산일이 임박한 경우 정산유예 신청(extension request) 후, CBP에서 유예 거부시 국제무역법원(CIT)에 별도 관세환급소송 및 예비적 금지명령(preliminary injunction) 신청 검토
    - \* 다만 CBP는 최근 정산 유예 신청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며, CIT도 예비적 금지 명령을 불허(12.15)하는 상황임을 참고
  - [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前, 정산 後]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(CBP)에 이의제기(protest) 검토 필요하며,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(불확실성 高)
    - 정산 후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, 이의제기 검토 필요
    - 정산 이후의 환급은 적시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설이 다수설인 바, 이의제기 여부 검토 (이의제기 없이 CIT 바로 소송제기 가능하다는 설도 있음)
  - [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, 정산 前]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전별 사후정정(post summary correction, PSC)만 제출하면 환급 가능
  - [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後, 정산 後] 정산일로부터 180일내 관세청(CBP)에 이의제기(protest) 검토 필요하며,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 상이 (불확실성 高)
    - 정산 이후의 환급은 적시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설이 다수설인 바, 이의제기 여부 검토 (이의제기 없이 CIT 바로 소송제기 가능하다는 설도 있음)
- (4)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 청구를 위해 선제적인 소송도 가능하나, 유사소송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성·시점 판단이 합리적
- 정산 이후에는 관세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, 정산 전에 정산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선제적 소송 증가 추세
    - \* [CIT 환급소송(누적)] ('25.10) 1건 → ('25.11) 64건 → (12.11) 245건 / 日 기업: 약 15건
  - 정산 후 이의제기 기각시에는 국제무역법원(CIT) 제소 검토
    - 단, 소송비용, 사건 공개 등 기업 부담 고려하여 선제적 소송 면밀 검토
  - 향후 몇 주내 대규모 정산이 예정된 기업은 추가적 안전 장치로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 청구 여부 신속히 검토
- (5) IEEPA 관세 납부내역 및 증빙의 체계적 관리 / 관계사·공급사·고객간 환급금 분배 및 정산방식 사전 검토 필요
- 특히, 한국 수출자는 관세 청구권이 부재한 경우가 많을 것인 바, 美 자회사 또는 수입사와 협력해 행정·사법 환급청구 절차 진행 검토